

[]조경식재·시설물공사업
[]건축공사업

신고서

| 접수번호 | 접수일 | 처리기간 | 즉시 |
|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|
| 신고인 | 단체명 | | |
| | 대표자 | 생년월일 | |
| | 자본금(자산평가액 또는 출자금) | | |
| | 사무실 소재지 (전화번호:) | | |
| 신고사업 | | | |
| 발 주 처 | | | |
| 소재지 및 면적 (조경식재·시설물 공사업인 경우, 포지의 소재지를 말합니다) | 소재지 | | 면적 |
| | 1 | | |
| | 2 | | |
| | 3 | | |
| 수목 보유 (조경식재·시설물 공사업인 경우) | 외 중(총 본) | | |
| | | | |
| 기술능력 보유 | | | |

「산림조합법」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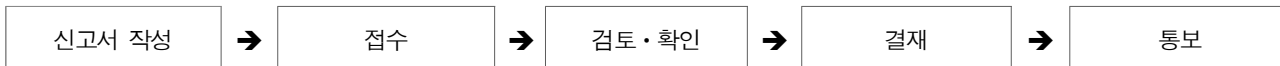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| 첨부서류 | | |
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|
| 신고인 제출서류 | 1. 별표 1 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.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 1부 3. 토지 및 수목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면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수목보유 증명서 각 1부(조경식재·시설물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| 수수료 없음 |
|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| 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. 토지등기사항증명서(조경식재·시설물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| |

처리절차



신고인

처리기관: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